

【 8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1.25.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  
져 함.

□ 주요골자

가.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휴가를 확대조정 함.

(안 제18조)

나.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5항)

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3조6항)

## 조례 제 호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 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 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 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제

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제21조제1항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의1을 “제26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 을 “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으로 한다.

제26조의2 다음에 제2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7조,제28조를 제28조,제29조로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당직근무)</u>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의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u>당직근무자</u>(이 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u>미연에 방지</u>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 하지 못하며, <u>당직근무</u>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③ <u>당직근무</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p>	<p><u>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u> ① ----- ----- ----- ----- <u>당직근무자는 모든</u> <u>사고를 방지</u> ----- ----- ----- -----.</p> <p>② <u>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u> <u>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u> <u>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u> <u>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u> <u>하여야 한다.</u></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 ----- ----- <u>당직 및 비상근무</u> -----.</p> <p>④ <u>당직 및 비상근무</u> ----- -----.</p>
<p><u>제10조(파견근무)</u> ① · ② (생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 에</p>	<p><u>제10조(파견근무)</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제 2 장 근무시간

### 제13조(근무시간) ①(생략)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군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 근무시간 등

### 제13조(근무시간) ①(현행과 같음)

②-----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 신 설 >	

-----	4일
-----	--
-----	10일
-----	13일
-----	16일
-----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복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외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병가) ① ----- ----- 60일 -----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침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 한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 180일 ----- ----- .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 ----- . 1.----- ----- ----- 참가할 때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참가 할 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는 할 때	7.----- -----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 기간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 ②-----출산휴가----- ---. ③-----여성보건휴가----- ④----- ----- ----- ----- 수업휴가----- ⑤----- -----포상휴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신설>	⑥교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의1(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관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 것을 말한다.

-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하계는 전형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7조(생략)

제28조(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생략)

제29조(현행 제28조와 같음)